

출자·출연기관 종합감사결과 공개

경상북도환경연수원 종합감사결과 공개

I. 감사개요

- 대상기관 : 경상북도환경연수원
- 감사기간 : 2017. 1. 10 ~ 1. 13(4일)
- 감사인원 : 회계감사담당 등 4명
- 감사범위 : 2013. 1월 이후 업무 전반

II.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- ▶ 행정상 : 8건 (주의 8)
- ▶ 신분상 : 4명 (훈계 4)

○ 승진임용 부적정

- ❑ ◆◆◆◆.◆.◆◆. 인사위원회에서 일반직 6급 ☆☆☆을 5급(☆☆부장)으로 승진임용 후 결원된 6급 팀장에 결원된 1명만 승진임용 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7급 2명(★★★, ◆◆◆)을 승진임용하여 정원 대비 현원 1명이 초과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▶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사전승인 없이 출연금 변경사용 부적정

- ❑ 출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
- ❑ 사업계획 내용 변경을 위한 사전 승인도 없이 출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접수한 당일 2015.12.18.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내부결재로 득한 후 일부를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▶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외래강사(보조강사) 운용 소홀

- ❑ 시·군 수탁 사업 보조강사 등은 위촉된 환경교사에서 선발하고 보조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데도
- ❑ ●●●●년 「◆◆◆◆ ◆◆◆◆ ○○ 간담회」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교사 위촉된 자를 선발하여 보조강사로 활용하지 않고 ◆◆◆◆◆◆◆◆의 2명(★★★, ◆◆◆)을 보조강사로 활용하고 외래강사수당 20회, 1,180천원 지급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★★★★★★★★ 공사 추진 부적정

- ❑ ●●●●년 ★★★★★★★★ ★★공사(사업비 512,911천원)를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행하지 않고 공사 완료 후 별도 발주하여 터파기·전선 매립 등 불필요한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결과 초래 및 하자 보수 등 책임관계 불명확
- ❑ 시설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구매해서는 안되는 물품(★★★, ◆◆◆, ◇◇◇) 3,700천원을 구매하는 등 예산집행 부적정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▶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

- ❑ ●●●●년 ★★★★★★★★ 및 ★★★★★ 조성사업에 사업비 34,202천원

으로 유실수(8종 523수)를 식재하면서 유실수 등의 추가식재가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시행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(주)▼▼▼의 4개 업체와 별도 발주

- ❑ 동일사업부지내 여러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여 하자보수 등의 책임관계가 불명확 하고 추가로 식재한 수목의 경우 생육 지장 우려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교육과제 등 각종 인쇄물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

- ❑ 연간 72회 1억원의 정도의 교재, 홍보물, 결과보고서 등을 단가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교육시기에 수의계약으로 교재를 발간하여 추진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 미이행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행사장비 임차료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

- ❑ ●●●●, ▼▼▼▼년 환경감수성증진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에코그린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어 합창단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는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공연행사마다 수의계약으로 장비임차료 지급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각종 문서관리 부적정

- ❑ 법인이 생산한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

결재일자 순서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과 없는 상태에서 사후에 등록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확보 후 방치하여 생산문서 존재여부 불명확

- ▶ 모든 기록물은 기록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기록물등록부에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, 매년말 기록물의 생산이 종결된 후에도 기록물 정리 및 문서고로 이관한 사실이 없는 등 문서보존 및 관리 부적정
- ▶ 연수원 문서고는 보존기록물에 대한 정수 현황 및 열람·대출 상황 대장 등에 대한 관련서류도 없으며,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매우 불량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종합감사결과 공개

I. 감사개요

- 대상기관 :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
- 감사기간 : 2017. 2. 7 ~ 2. 10(4일)
- 감사인원 : 회계감사담당 등 5명
- 감사범위 : 2013. 3월 이후 업무 전반

II.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- ▶ 행정상 : 9건 (주의 8, 시정 1)
- ▶ 신분상 : 1명 (경징계 1)

○ 연구직 채용 부적정

- ▶ ▼▼▼▼년 연구위원 신규 직원 채용공고시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연구위원 임용자격기준인 ‘연구원 3년 이상으로 근무’를 삭제하여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응시기회 박탈
- ▶ ▼▼▼▼년. ☆☆☆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으로 채용 한 후 ▼▼▼▼년.★.★일자 인사발령에는 ◇◇◇◇◇◇팀의 전담인력에 발령함으로서 「여성가족부 ◇◇◇◇◇◇센터 사업 운영 안내」 운영인력관리에 따른 전문인력자격 기준으로 채용하여야 할 전문인력을 자체 인사관리규정으로 채용된 결과 초래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▶ 관련기관 기관장 경고 조치

○ 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센터 직원 채용 부적정

- ▶ ▼▼▼▼년, ▼▼▼▼년 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센터 취업설계사 직원채용은 관련지침에서 정한 자격기준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자격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채용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▶ 관련자 신분상 경징계 조치

○ 기념품 구입 및 관리 부적정

- ▶ ▼▼▼▼년 내방객 등에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(◆◆◆◆) 12개를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구입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구입
- ▶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장소에 물건을 보관하고 배부시마다 물품수불부에 등록하여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함에도, 물품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배부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언론광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

- ▶ 여성일자리 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지 않고 8건 9,324천원에 대하여 ◆◆◆, ◆◆◆◆◆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보조사업 자금집행 부적정

- ▶ 도 위탁사업인 ◆◆◆◆◆ ◆◆◆ ◆◆◆◆을 개최하면서 행사가 종료된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사전 승인없이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포괄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집행의 투명성 미확보

- ▶ 매년 연구과제사업, 위탁과제사업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비목과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1개 비목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한 후 인건비, 일반운영비, 홍보비,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집행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초과근무 매식비 집행 부적정

- ▶ 직원의 초과근무명령이 없는데도 ◇◇◇◇년부터 ◆◆◆◆년까지 56회 7,629,500원의 매식비를 지출하였으며, 실제 초과근무 실시 여부는 불명확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

- ▶ 2007년부터 3개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감사일 현재 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 303,748원에 대하여 세입 조치 하지 않는 등 방치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
▶ 방치된 신용카드 포인트 303천원 회수 조치

○ ◆◆◆◆ ◆◆ ◆◆사업 계약 및 정산검사 부적정

- ▶ ◇◇◇◇년 ◆◆◆◆ ◆◆ ◆◆ 용역 사업을 계약 체결하면서

사업비가 22,000천원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1인 견적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◇◇◇◇.◇.◇일 (주)○○○○와 22,000천원으로 계약체결

- ▶ (주)○○○○○○에서 2016.12.20일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에는 온라인 이벤트를 위한 상품권 구입 등의 비용이 사업자 부담이 아닌 선금으로 집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사업비로 처리하고 잔금 6,000천원을 집행하여 611,320원의 재정손실이 발생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독도재단 종합감사결과 공개

I. 감사개요

- 대상기관 : 독도재단
- 감사기간 : 2017. 3. 28 ~ 3. 31(4일)
- 감사인원 : 회계감사담당 등 4명
- 감사범위 : 2013. 3월 이후 업무 전반

II.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- ▶ 행정상 : 10건 (주의 8, 시정 2)
- ▶ 신분상 : 3명 (훈계 3)

○ 인사 운용 부적정

- ❑ ◆◆◆◆.◆.◆◆. 일반직 5급(팀장급) 신규직원 채용공고시 ‘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4년이상 경력 소지자’로 공고하였으나 경력이 안되는 ◆◆◆을 5급으로 채용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▶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승진임용 부적정

- ❑ 독도재단 직급별 정원은 7급 2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◆◆◆◆. ◆.◆◆ 인사위원회에서 7급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결원이 없는데도 8급 2명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 사유로 7급으로 승진 임용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▶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

- ▶ 도 출자·출연 기관·단체 예산편성 및 연봉제 운용기준에 의하면 출자·출연 기관에서는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
- ▶ 2016년 1월부터 기획운영팀에 근무하는 ◆◆◆외 4명에 대하여 특정업무수행경비 3,618,660원 지급(월 80,000원)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
- ▶ 잘못 지급된 특정업무수행경비 2,720천원 회수 조치

○ ◆◆◆ 예술제 행사용역 분리발주 부적정

- ▶ 단일사업은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계약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“제◆회 ◆◆◆◆◆◆ ◆◆ 용역”을 시행하면서 플래시몹 행사진행 등 6개의 개별사업으로 사업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언론광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

- ▶ 방송사, 신문사 등에 언론 홍보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 집행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

- ▶ 시간외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메뉴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로, 이용한 업소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, 특근매식비를

현금으로 지급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▶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- ❑ 업무추진비(경조사비)를 집행하면서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는 ◆◆◆ 대표, ◆◆◆ 직원 등에게 7건 350,000원 지급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공무국외출장자 국제통화요금 지급 부적정

- ❑ 공무국외여행자에게는 일비가 지급됨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2013~2017년까지 해외출장자가 사용한 국제통화료(로밍비용)에 대하여 21회 3,733천원을 부당하게 지급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직인관리 소홀

- ❑ 물품관리관은‘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’에 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은 카드 작성 시 직인은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회계관직으로 징수관, 경리관, 재산관리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
- ❑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직에 대한 인장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회계관직에 대한 인장을 일부 신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물품관리규정에 의한 직인 및 관련대장 등을 미작성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
- ▶ 관련 규정 제정

○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

- ▶ 품목중심 편성방식이 아닌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품목별 중심으로 예산편성
- ▶ 독도문화 대축제, 독도자료전, 독도 매거진 제작 등과 같이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, 일반운영비,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민간위탁비로 편성하여 집행
- ▶ 독도관련 단체의 민간행사 보조금지원 등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목적과 용도에 따라 비목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독도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후 집행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종합감사결과 공개

I. 감사개요

- 대상기관 :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
- 감사기간 : 2017. 8. 29 ~ 9. 1(4일)
- 감사인원 : 회계감사담당 등 4명
- 감사범위 : 2014. 1월 이후 업무 전반

II.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- ▶ 행정상 : 9건 (주의 6, 시정 3)
- ▶ 신분상 : 3명 (훈계 3)

○ 직원 채용 부적정

- ❑ ★★★★★.★★. 교육·일반 마급 직원 채용공고시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교육·일반 마급 임용자격기준인 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8급 상당 근무 경력, 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자’를 삭제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응시기회 박탈
- ❑ ★★★★★.★★. 연구직 라급 채용공고시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채용분야의 실무 경력으로 공고(실무경력 3년 → 5년)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▶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소속직원에게 자체교육 강사료 부담 지급

- ❑ 독립운동기념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체교육에 대해 소속직원은 강사료를 받을 수 없으나, 자체교육을 시행하면서 소속직원의

강의에 대해 2014년 14회 4,130천원, 2015년 14회 6,020천원, 2016년 5회 2,050천원, 2017년 8월 현재까지 2회 900천원, 총 35회 13,1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
- ▶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13,100천원 회수
- ▶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◇◇◇◇◇◇◇◇ ◇◇◇ 행사 대행계약 부적정

- ▣ ◇◇◇◇◇◇◇◇ ◇◇◇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대행업에 대한 중소기업 ‘직접생산확인증명서’를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업체인 ◆◆◆◆◆◆◆(대표 ◎◎◎)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행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용역사업 검수 부적정

- ▣ ◇◇◇◇◇◇◇◇ ◇◇◇ 및 ◇◇◇◇◇◇◇◇ 용역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함에도 검사·검서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, 성과물 납품기한이 63일 지난 뒤에 납품 하였는데도 지연배상금 3,890천원 미 부과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
- ▶ 미 부과된 지연배상금 3,890천원 회수

○ 법인 기본재산 관리 소홀

- ▣ 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2017.4.30.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준공을 하였음에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명시

하지 않는 등 기본재산 관리 소홀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

○ 시설공사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

- 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에 의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체결하여야 함에도 물량 산출내역서, 추정가격 등에 대한 서류가 없어 시설공사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계약업무 소홀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계약정보 공개 미이행

- 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발주계획, 계약체결 현황 등에 대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4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106건에 대하여 미공개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복무관리 소홀

- ❑ 행정사무감사 준비, 도의회 준비, 예산편성 작업, 도청 등 출장 업무 수행, 직무연수 탐방, 토지보상 등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 하였으며 특히 출근시 9시 이후에 출근하여 지문인식을 하는 등 근태관리 소홀

조 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차량 부당운행 및 유류수불부 미작성 등 차량관리 부적정

- 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여서는 아니 되고, 보유차량에 대해 차량유류수불부와 차량운행일지 등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
- ▣ 출장명령 등 근거 없이 차량을 부정당하게 사용하고, 차량운행 일지를 일괄 기재하는 등 차량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

조 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종합감사결과 공개

I. 감사개요

- 대상기관 :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
- 감사기간 : 2017. 9. 26 ~ 9. 29(4일)
- 감사인원 : 회계감사담당 등 5명
- 감사범위 : 2014. 5월 이후 업무 전반

II.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- ▶ 행정상 : 9건 (주의 8, 시정 1)
- ▶ 신분상 : 5명 (훈계 5)

○ 인사운용 관련

- ❑ ◇◇◇◇.◇.◇◇. 일반직 6급 직원 채용공고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자격기준인 ‘2년이상 문화산업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’ 로 공고하여 채용하였으나
- ❑ 인사규정에서 정한 문화산업분야는 너무 광범위하여 서류전형의 변별력이 없어 재단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가 채용되는 결과 초래
- ❑ 특히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에는 신규 채용에 대한 사항이 없어 인사위원회 기능 유명무실

조치

-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
- 관련규정 개정

○ 선금지급보증서 채권 관리 부적정

- ❑ 선금은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공사에 선금 지급
- ❑ 선금 지급시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간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선금지급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만 채권 확보
- ❑ 선금은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 되었을 때에는 연장된 기간 만큼 추가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미확보

조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겸직허가 미이행

- ❑ ◇◇은 한국정신문화재단, 독립운동기념관의 비상근 이사직을 겸임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으며, 월별 외부강의 초과부분에 별도 승인 없이 출강

조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공사 및 용역 분리발주 부적정

- ❑ 단일사업은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계약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“★★★★ ★★★★★ ★★ ★★”등 6건을 시행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

조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▸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관리 소홀

- ❑ 지방재정법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

지출을 세출로 하며,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

- ▣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매년 300여건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용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장기관 보관하였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한 후, 용도 구분없이 세입조치

조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공공예금 계좌 관리 소홀

- ▣ 위탁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계좌를 해지하여, 해지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위탁사업 교부처에 반납하고 사업을 종결하여야 하는데도
- ▣ 2017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었는데도 계좌를 정리하지 않아, 15개의 휴면계좌를 방치하는 등 공공예금 계좌관리에 소홀

조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언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

- ▣ 방송사, 신문사 등에 언론 홍보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★★★★★ 사업, ★★★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면서 언론사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

조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계약정보 공개 미이행

- 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발주계획, 계약체결 현황 등에 대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4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113건에 대하여 미공개

조 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

- ❑ 공사·물품·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완료계(납품계, 준공계)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검사조서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 구두로 승인 한 것을 정상 처리하여 지급

조 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경북농민사관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

I. 감사개요

- 대상기관 : 경북농민사관학교
- 감사기간 : 2017. 10. 24 ~ 10. 27(4일)
- 감사인원 : 회계감사담당 등 4명
- 감사범위 : 2014. 12월 이후 업무 전반

II.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- ▶ 행정상 : 5건 (주의 5)
- ▶ 신분상 : 4명 (훈계 4)

○ 농어촌 일자리 및 인력양성 지원센터 보조사업 운영 부적정

- ❑ 동아리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(동아리운영비, 지도교수 활동비 등) 지급 규정을 활동실적 여부 불문하고 지급토록 자체기준을 제정하고 도 승인 없이 시행
- ❑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비로 지급하여야 할 지도교수 활동비를 직접 농민사관학교에서 집행

조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전문건설업 미등록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

- ❑ 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 ★★★★★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미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체결
- 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 ★★★★★ 사업 : 19,800천원 ◆◆◆◆◆

조치

-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20◆◆~20◆◆년 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 ★★★★★ ★★ 및 ★★★★★ 수립
용역 추진 부적정

- 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규정에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
원가계산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
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30,000천원
이상 일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
는데도

- ▣ 20◆◆~20◆◆년 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 ★★★★★ ★★ 및 ★★★★★
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(주)○○
○○○○○○○○에서 제출한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으며
계약금액이 35,000천원인데도 계약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

조치

-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외부강의 회의 신고 등 부적정

- ▣ ☆☆☆☆☆☆ ★★★★★은 (사)◆◆◆◆◆◆◆◆의 1건에 대하여 외부
강의 요청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하였
으며 ○○○○○○ ◆◆◆은 외부강의 신고를 6개월 이상 지연하여
신고

조치

-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선금지급보증서 채권 관리 부적정

- ▶ 선금 지급시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간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선금지급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만 채권 확보
- ▶ 선금은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 되었을 때에는 연장된 기간만큼 추가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미확보

조 치

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종합감사결과 공개

I. 감사개요

- 대상기관 :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
- 감사기간 : 2017. 10. 31 ~ 11. 3(4일)
- 감사인원 : 회계감사담당 등 4명
- 감사범위 : 2014. 5월 이후 업무 전반

II.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- ▶ 행정상 : 7건 (주의 7)
- ▶ 신분상 : 4명 (훈계 4)

○ 인사운영 부적정

- ❑ ◆◆◆◆◆◆◆◆ 일반직 6급 직원 채용공고시 정관 목적에 맞게
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한 경력직 임용자격기준으로 경력직으로 채용
하여야 하나 자격요건 없이 공개채용
- ❑ 운영관리규정 직제 및 정원에는 6급 정원이 없는데도 규정을 개
정하지 아니하고 6급 채용
 - 6급으로 채용 후 1년 6개월의 시보기간이 지나면 5급으로 승급

조치

- ▶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

- ❑ ◇◇◇◇◇◇◇◇ 교체 및 ◇◇◇◇◇◇ 설치공사 외 3건을 시행
하면서 전기 및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를 미등록하고 사업자등록
증만 소지한 무자격업체(○○○○○ ●●●●)와 수의계약 체결

조치

-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입주기업 임대료 징수 등 부적정

- ▣ 입주기업 임대료는 운영관리규정 및 시설물임대사용규칙에 의거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관리비(전기세, 상·하수료 등)는 감면규정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●●●●(◇◇◇)에게만 감면
 - 타 임대사무실 및 식당에는 관리비 부과

조치

-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-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

○ 불용품 처분 업무 소홀

- ▣ 물품이 불용이 결정될 경우 감정평가 등의 사용 가치를 검토 한 후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데도
- ▣ 비디오 프로젝트 37종 51개 물품을 불용 결정 한 뒤 사용가치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(주)◇◇◇◇◇에게 무상으로 폐기 처분

조치

-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

- ▣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장비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
- ▣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집행되어야 할 경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

조치

-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☆☆☆ ☆☆☆ ☆☆☆☆공사 시행 부적정

- ▣ ☆☆☆ ☆☆☆ ☆☆☆☆공사를 시행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는데도 철근콘크리공사업을 가진자와 일체 수의계약

－ 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공사 : 17,500천원 (주)★★★★

조 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

○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- ▣ 업무추진비(촉부의금 및 화환)를 집행하면서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는 ★★★★★, ◇◇◇ 등에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 35건 3,180천원 지급

조 치

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